

한국식품연구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서

본인은 한국식품연구원 채용 합격자로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.

확인사항	해당	비해당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에 대한 해당여부 -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될 수 없음		
1. 피성년후견인		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	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	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	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	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	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	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	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	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	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	

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(서약인) 생년월일:

성명:

인(서명 또는 날인)